

' 19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

근로능력과 기회 측면에서 취약한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부문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연계·지원하여 근로능력 배양 및 자활·자립을 돕고자 함.

I 추진 개요

- 추진근거 :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(고용지원)
- 추진개요
 - 지원대상 : 시설입소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
 - 지원분야 : 공공일자리, 민간일자리, 공동작업장
 - 지원기관 : 자치구, 시(市) 사업소, 노숙인 시설, 쪽방상담소, 민간 복지시설 등
 - 지원방법 : 근로 희망 노숙인의 근로능력에 따라 일자리 제공기관과 매칭
 - 분야별 추진내용
 - 공공일자리 : 공공일자리 우선 지원, 참여자의 단계적 민간일자리 전환 유도
 - 민간일자리 : 노숙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근로능력평가 실시·반영
 - 작업장 : 근로 미약자의 알히는 습관을 배양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작업장 확대

II 추진 방향

-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 특성과 욕구를 감안한 일자리 지원
- 일자리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 확대
-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참여자의 근로유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
- 노숙인 시설의 유휴시간대 활용 또는 공간 확보하여 신규 작업장 설치 지원



'18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

□ '18년 추진실적 : 총 2,643명/예산 9,153백만원

《 부문별 》

- 공공일자리 : 특별자활 741명, 일자리갯기 등 366명
- 민간일자리 : 1,154명
 - 건설일용 507명, 서비스 165명, 경비·운전·시설관리 431명, 생산직 51명
- 공동(자활)작업장 : 382명

《 근로형태 등 》

- 민간일자리 근로형태 : 상용직 647명(55%), 일용직 507명(45%)
 - ※ 상용직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('17년 54% → '18년 55%)
- 민간일자리 근속기간 : 1년 미만 804명(69%), 1년 이상 350명(31%)
-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로 전환 : 190명
 - ※ 공공일자리 1인 평균 임금은 7,828천원으로 총 1,487백만원 예산절감 효과

□ 추진상 한계

-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전환하는데 두려움을 느낌
- 민간일자리 근로형태상 일용직 비율이 높아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짐
- 공동작업장은 참여자 특성상 참여율이 저조하고 임금단가가 낮음

□ 개선방안

- 민간부문 진입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해 자존감 향상 상담 진행
-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발굴 및 개인별 사례관리 강화
- 근로능력이 부족한 노숙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접근이 쉬운 공동작업장 확충 및 임금단가가 높은 일감 유치

IV ' 19년 세부계획

- ◆ 노숙인의 근로능력에 따라 단계적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, 삶의 질 향상
 - 공동작업장(일하는 습관 형성) → 특별자활근로(자기통제 등 근로능력 배양)
→ 일자리갯기(전일제) → 민간일자리(상용직, 근로유지)

1. 노숙인 근로능력에 맞는 공공일자리 지원(상시)

□ 특별자활근로 : 550명

- 대 상 :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쪽방주민
 - 근로능력평가 결과 30점 미만이며, 근로의욕 고취, 훈련이 필요한 노숙인
- 지원기관 : 자활 및 재활시설, 쪽방상담소
- 근로내용 : 시설 환경정비, 급식보조 등
 - 근로일수 : 일 5시간, 월 15일~19일(주·월차 포함)
 - 근로기간 : 3개월(단, 65세 이상 및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첨부, 시설장 확인 후 추가 3개월 연장) ※노인복지법 제26조(경로우대) ②항
 - 임금단가 : 8,350원('19년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), 월 62만원~80만원 내외
 - 지원범위 : 임금 및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
 - 급여지급 : 매월 31일 지급(계좌지급 원칙, 단 현금수령인 경우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급)
 - ※ 특별자활근로 참여자는 가급적 일자리갯기 사업으로 전환 연계

□ 일자리갯기 : 230명

- 대 상 :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쪽방주민
 - 근로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 및 자활이 가능한 시설 추천을 받은 노숙인
- 지원기관 : 시·산하사업소, 동부시립병원, 희망웃방, 장애인작업장 등
 - ※ 장애인작업장 일자리 지원사업은 '19. 12. 31. 종료

- 근로내용 : 공원청소, 병원업무 보조, 재활용, 장애인작업장 도우미 등
 - 근로일수 : 일 8시간, 월 27일 내외(주·월차 포함), 11개월
 - ※ 일자리갯기 사업 참여자 및 종료자는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
 - 임금단가 : 8,350원('19년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), 월 180만원 내외
 - ※ 일자리갯기 사업장 임금은 동일 원칙(급식보조 및 호텔후원물품 사업 포함)
 - 지원범위 : 임금 및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(장애인작업장은 4대 보험료 제외)
 - 급여지급 : 익월 5일 이내지급(근로 종료일 이전에 지급 불가, 계좌지급 원칙, 단 현금수령인 경우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급)

2.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확대 발굴 1,500명

일자리 취약계층(노숙인) 일자리 박람회 개최

- 목 적 : 노숙인의 근로 욕구에 맞는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하고자 함
- 대 상 :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노숙인
- 일시/장소 : '19. 5. 17.(예정), 서울광장 *세부계획 별도 수립
- 참여기업 : 80개사 민간기업 (온라인 40개사, 오프라인 40개사)
- 추진방법
 - 민간 참여기업 부스 설치, 취업 희망 노숙인과 즉석 면접
 - 공공일자리 참여노숙인 박람회 참여 구직 상담 진행
 - 민간기업과 제공 일자리 사전검토 후 노숙인 특성을 고려한 협의 매칭
- 향후계획
 - 노숙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계획 수립 : 4월 중
 - 노숙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: 5월 중

3. 근로능력평가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

노숙인 근로능력평가 실시

- 목 적 : 노숙인 개개인의 근로의지, 역량을 파악할 근거자료 및 일자리 매칭에 필요한 백데이터를 제공하여 노숙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

- 추진기간 : '19. 1월 ~ 12월
- 조사대상 : 노숙인 및 쪽방주민(수급자, 장애인1.2등급 제외)
- 조사방법 :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'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'을 범주화하여 설계한 설문 문항(12개) 활용
 - 평가항목 : 연령, 신체질환, 정신질환, 우울감, 알코올 중독, 학력, 체력, 근로의욕, 자기통제, 자기관리, 노숙기간, 의사소통능력
- 평가방법 : 시설 종사자와 노숙인 간 개별상담을 거쳐 건강상태, 연령 등을 고려한 설문항목 분석·배점
- 활용계획 : 평가결과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 연계 시 반영, 사후 관리 등 고용 지원의 가이드 라인으로 적용

4. 근로 미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공동작업장 운영

- 공동작업장 신규 확대('18년 16개소 382명 → '19년 17개소 420명)
 - 목 적 : 근로능력 및 의지가 미미한 노숙인 등에게 부업형식의 일감을 제공하여 기초적인 일하는 습관 형성 후 단계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연계하고자 함
 - 추진기간 : '19. 1월 ~ 12월(연중)
 - 선정방법 :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사업신청한 노숙인 시설
 - 운영품목 : 쇼핑백, 장난감 조립, 양말인형 등 소품 제작
 - ※ 현행 쇼핑백 접기 작업 위주에서 임금단가가 높은 타공기를 이용한 쇼핑백 완제품 제작 등으로 전환
 - 지원내용
 - 신규설치 : 필요부품 및 PC(노트북 지원불가)
 - 기존시설 : 작업장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요장비(타공기 등)
 - ※ 임대료 지원 불가

V

행 정 사 항

- 시(市) : 시설종사자 대상 근로능력평가 방법 등 교육(4월)
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등 지도 점검(9월)
일자리지원센터 독립, 사무위탁 등 운영방안 검토(상반기)
- 자치구 : 관내 공공일자리 사업장 감독·점검,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
-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: 노숙인 일자리 추진실적 제출(익월 5일 한)
 - 취업 전·후 사례관리, 노숙인 민간일자리 연계, 근로능력평가 통계관리 등
- 서울시 노숙인시설협회 : 공동작업장 운영현황 제출(익월 5일 한)
 - 분기별 보조금 사용내역서 및 정산서 제출
 - 일일 작업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사례관리 추진(상시)

- 붙임 1. 노숙인 일자리 추진실적 제출양식.
2. 분기별 보조금 정산서 양식.
3. 일자리 현금수령증 양식.
4. 서울형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 도구 1부. 끝.